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1월 22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2. 25.) 상정/제안설명/검토
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 3. 10.) 상정/축조심사/의결
(원안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3. 11.) 상정/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은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양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형벌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기술개발 및 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취지의 입법임.

개정안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형벌 및 양벌규정을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는 다소 기대할 수 있으나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제고하거나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입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위원)

원안의결함.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0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양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第21條(罰則) 第11條第1項의 規定</u> <u>에 위반한 者는 500萬圓이하의</u> <u>罰金에 處한다.</u>	<u>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을</u> <u>위반하여 제10조에 따른 검사를</u> <u>받지 아니한 항공기·우주비행</u> <u>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u> <u>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u> <u>태료를 부과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u> <u>주항공청장이 부과·징수한다.</u> <u><삭 제></u>
<u>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u> <u>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u> <u>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u> <u>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u> <u>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u> <u>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u> <u>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u> <u>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u> <u>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u> <u>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u> <u>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u> <u>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u> <u>하다.</u>	